

청주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가단2442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유재영

피 고 1. B

2. C

3. D

4. E

변 론 종 결 2021. 4. 2.

판 결 선 고 2021.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612,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16. 11. 22. 남편이자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G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H,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H는 2019. 1. 21. 00:12경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들이 2019. 1. 28.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9. 4. 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사망보험금 5,000만 원, 지연이자 448,339원 합계 50,448,33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계약 체결 시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 각 12,612,084원(= 50,443,339 × 1/4)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참조). 또한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고,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참조). 다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참조).

2) 판단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6, 7, 8, 1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의 성명 및 서명란에 망인의 이름과 서명이 각 현출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F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 후 피고의 콜센터 상담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직원에게 망인이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던 사실, ③ 망인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 후 피고의 콜센터 상담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직원에게 망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던 사실, ④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인 G 또한 관련 사건(청주지방법원 2019가단24773)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자필로 서명을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의 성명 및 서명란에 기재된 망인의 이름과 서명이 망인의 필체가 맞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실시한 필적감정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의 성명 및 서명란에 기재된 망인의 이름과 서명의 필체는 F 또는 G의 필체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망인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달리 다른 사람이 망인을 대신하여 위 청약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⑥ 관련 사건에서 실시한 필적감정에서 감정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의 성명 및 서명란에 기재된 망인의 이름과 서명의 필체와 망인의 은행거래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의 필체가 서로 상이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위 감정은 대조 문자수가 한정적이고, 두 대조 문서는 13년 내지 16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격을 두고 작성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자필로 서명한 서면으로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망인의 서면동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